

미국의 가공란 검사법(2)

계란은 식품차원에서 절대적
존재이다.

인간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생산된 鳥이 위생적인
유통체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때 가공란의
중요도는 재인식되어야 한다.



유익종

농유공 종합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제5조(검사, 재검사, 부적격품 판정)

(가)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위법표시되거나 또는 이물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란이 취급과정에서 유입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그 것이 취급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무장관은 본법 제15조에 의해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리 등의 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하여 가공란을 처리하는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공란 처리의 계속적인 검사를 본법을 근거로 하여 공포된 규칙에 따라 실시 및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것은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시설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법 제15조(가)(1)의 필요조건을 혼란시키지 않게 난(卵)에 사용하여 어떠한 식품을 제조하는 식품 제조처나 점포 또는 레스토랑 등 모두를 그 사업에 관한 가공란을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본다.

(나) 농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사업장에 대해서 식품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는 난 및 가공란의 유치나 부적격품의 구분 등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인사업장에 있어서 이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난 및 가공란은 부적격품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같은 부적격품 판정결정에 대해 어떠한 불복신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검사원의 감독하에 식품으로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단 재검사에 의하여 이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하는 것의 판명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원의 감독하에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로 이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부적격품 판정 및 폐기를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만약 불복신청이 발생하면 재검사가 완료되기까지는 그 난이나 가공란은 적당한 확인을 붙여 분리하여야 한다. 만약 농무장관이 불복신청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검사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적격품 판정이 재확인되면 그 난 또는 가공란은 검사원의 감독하에 식품으로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라) 농무장관이 이상의 것 외에 난취급업자의 사업용 건물이나 설비, 재고상태, 업무상태 및 업무

기록을 그리고 본법 제11조에서 기록장부를 요구하는 기타 사업자의 업무기록 및 재고상태 또는 식품에 적합한 난(卵)만이 그 목적에 사용되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나 난취급업자 및 기타의 자(者)가 본법 제8조의 필요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당하다고 볼때 농무장관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보건, 교육, 후생장관이 가공란을 처리하는 사업장 이외의 식품제조처, 점포 및 레스토랑 등에 대해서 이같은 필요조건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같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의 양쪽 장관의 대리인은 본법에 정해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사업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허가된다.

제 6 조 (위생관리, 설비, 조업방법)

(가) 각 공인사업장은 용도 제한란의 구분 및 처분에 관한 규제를 포함,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경우 위생적인 방법으로 조업을 하거나 또는 정해진 시설이나 설비, 기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농무장관은 기타의 시설, 설비, 기기 또는 조업이 본조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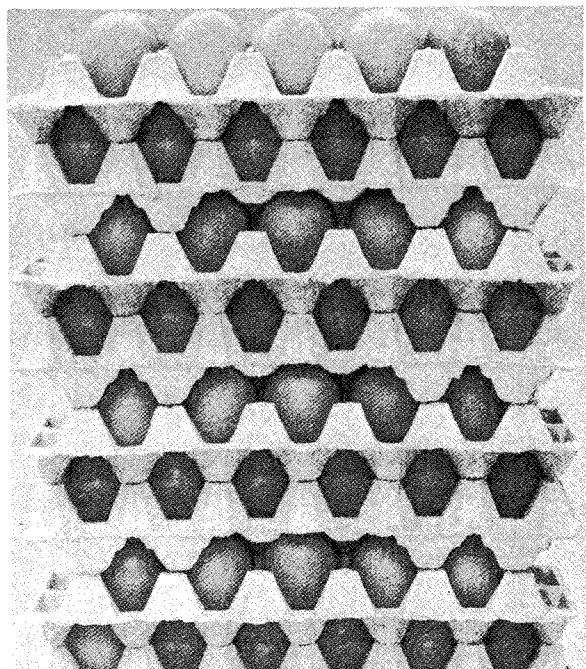
제 7 조 (공인사업장에 있어서 가공란의 살균과 표시)

(가) 본 법을 토대로 공인사업장이 검사되어 이물 함유가 없다고 인정된 가공란은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서 별도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업장으로부터 출하하기 전에 모두 살균되어야 한다. 또 공인사업장으로부터 출하되는 시점에서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가공품이 처리된 사업장을 표시하는 공인사업장명표 및 공인사업장번호나 또한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가공품에 대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시로 처리되지 않은 것임을 보증하는 설명서를 출하용 용기나 직접용기 또는 양쪽용기의 표면에 뚜렷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인사업장에서는 가공란에 허위나 기만적인 혹은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서 인정하지 않

는 라벨이나 용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농무장관이 공인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여도 좋다고 인정한 라벨 혹은 용기의 크기나 형태가 특히 허위 또는 기만적이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를 얻었다면 이를 농무장관이 규정한대로 변경시키고 허위나 기만적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농무장관은 그러한 것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당해 라벨 또는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사용하여도 좋다고 인정된 자가 농무장관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그자는 공청회를 청구할 수 있다.



▲ 깨끗이 처리된 달걀은 우선 소비자의 눈길을 끌게 된다.

그러나 농무장관이 지시한 경우 당해 라벨 또는 용기의 사용은 공청회 및 농무장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에 중지시켜야 한다. 그와 같은 결정은 고지를 받은지 30일이내에 그자가 그의 주요사업소가 소재한 순회재판구의 합중국공소재판소 혹은 콜롬비아특별구의 합중국재판소에 공소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최종적인 절차로 된다. 본조에 의한 공소에 대해서는 식육처리매매업자 및 가축취급소법(Packers and stockyards Act, 1921, U.S.D 194) 제20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8 조(금지행위)

(가)(1)어떠한 자도 어떠한 사업활동에 대해서도 식품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용도 제한란을 매매 또는 수송하거나 혹은 매매, 수송을 위한 신청이나 수취를 해서는 안된다. 단 농무장관이 식품에 적합한 난(卵)만으로서의 사용목적을 확실히하기 위해서 정한 조건을 모든 충족시키고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의해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어떠한 난(卵)취급업자도 판매를 위해서 식품을 제조할 때는 용도제한란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를 보유할 수는 없다. 단 농무장관이 식품에 적합한 난만으로의 사용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의해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1)어떠한 자라도 본법의 표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사업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란을 처리할 수는 없다.

(2)어떠한 자라도 본법에 의하여 검사를 필요로 하는 가공란을 매매하거나 수송 혹은 매매, 수송의 신청이나 수송을 위한 수취를 할 수는 없다. 단 가공란이 본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되고 본법 제7조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표시, 포장이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공인 사업장의 처리업무 담당자는 본법 제6조 (가)항의 필요조건이나 그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4)공인사업장의 처리업무담당자는 이물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란이 식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공란이 사업장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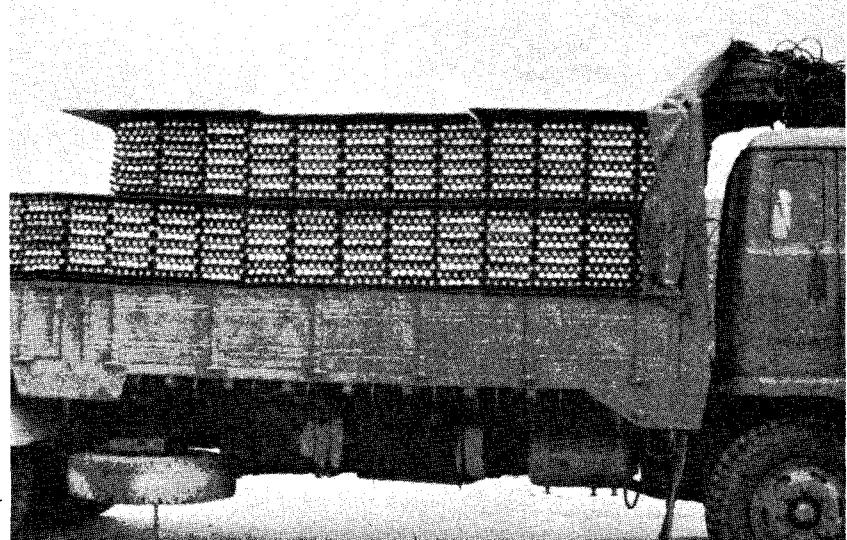
(다) 어떠한 자라도 본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라)(1)농무장관의 승인 없이는 공식검인이나 그 모사(模寫)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의장 또는 공식검인이나 그 모사(模寫)를 사용한 라벨 혹은 공식증명서나 그 모사가 들어있는 양식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할 수는 없다.

(2)공식의장이나 검인 또는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안된다.

(3)농무장관의 승인을 얻은 공식의장, 검인증명서 또는 그 모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동일한 공식의장이나 검인에서 벗어나거나 소실 파기되어서는 안된다.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사용금지 명령이나 와있는 라벨이나 용기는 그 명령이 최종적으로 법적확인이 있은 후, 또는 상기조항에 의해서 공소수속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의 공소가능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소비증가는 산업발전을
이루하는 것이고 업계를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다.



(4) 농무장관이 정한 규칙에 위반하여 공식의장이나 검인 또는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공식의장이나 검인, 증명서가 벗겨지거나 소멸, 파기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5) 고의적으로 농무장관이나 그 대리인이 직접 통지하지 않은 공식의 장 혹은 모사, 모조 위조된 것이나 부적당하게 변조된 증명서 또는 어떠한 의장이 아닌 라벨 혹은 모조, 모사, 위조된 것이나 부적당하게 변조된 공식검인을 사용한 난이나 가공란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6) 고의적으로 하주(荷主)증명서나 기타 비공식 증명서 또는 농무장관이 정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증명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고의적으로, 실질적인 검사나 그 면제사실이 없으며 본법에 근거하여 검사나 면제가 안된 것을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8) 농무장관이나 보건, 교육, 후생장관의 대리인은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에는 본법의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 혹은 업무를 실시할 장소의 설립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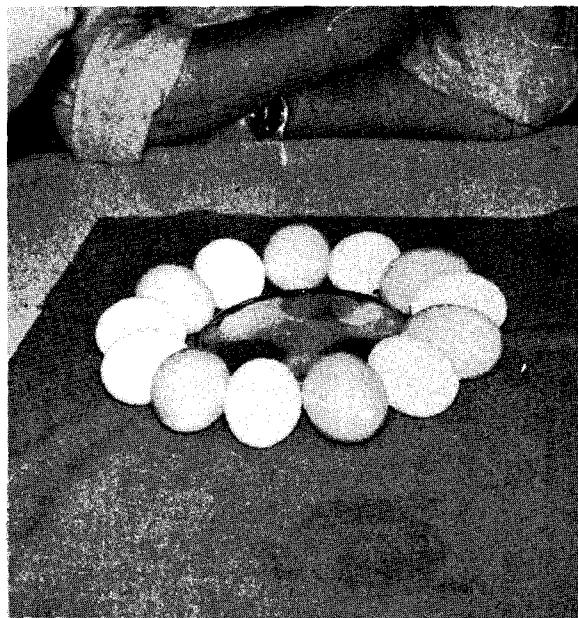
(마)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은 누구라도 어떤 문제가 있은 뒤에 기업비밀로서 지켜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법에 근거하여 얻은 정보일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혹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공식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소송수속에 대해서 재판소가 명령했을 경우라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9 조 (연방정부, 주정부 사이의 협동)

농무장관은 본법의 모든 조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그러한 것이 본법의 목적달성이 이익이 된다고 고려될 경우에는 적당한 주정부나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관계부처와 협조할 수 있다. 농무장관은 시험, 검사,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부처 직원에게 위임하여 실행하여도 이것들의 목적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려될 경우에는 이를 관계부처 직원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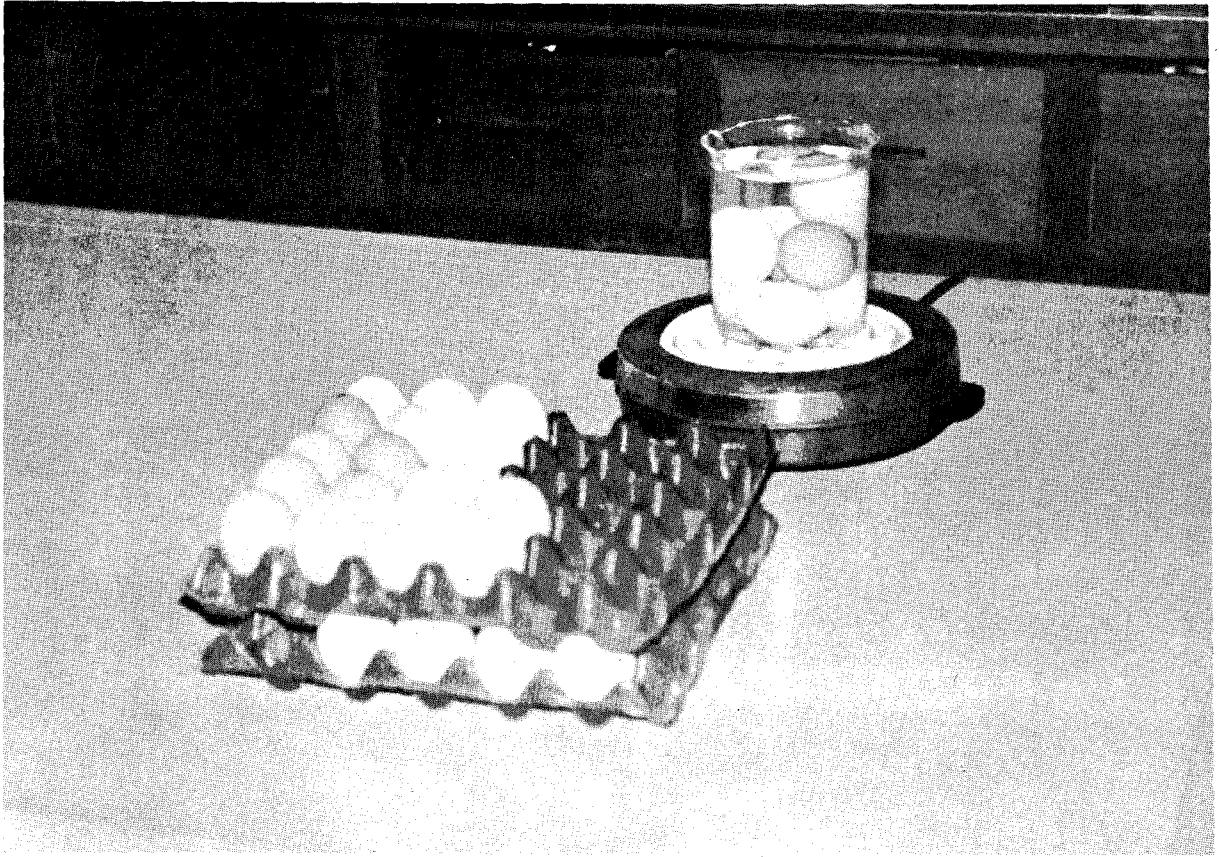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실시할 경우, 해당 관계부처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농무장관이 해당 관계부처에 변제하여야 한다.

어떠한 卵 취급업자도
판매를 위해서나 식품을
제조할 때에 용도제한란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를
보유할 수는 없다.



제10조 (식품으로 볼 수 없는 난과 가공란)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공란의 처리는 본법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당해 물품은 판매나 수송의 신청에 앞서 식품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 변성하거나 한 것은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어떠한 자라도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 변성된 것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



도제한란이나 가공란을 매매하거나 수송 혹은 매매 수송의 신청이나 수송을 위한 수취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난가공업자 및 관련산업에 있어 장부기록에 관한 기타 의무)

본법의 모든 조항에 따라 본법을 기초로 하여 공포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난 또는 가공란을 수송, 출하 및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모든 난취급업자는 농무장관이나 보건, 교육, 후생장관이 정한 기간동안에는 정해진 양식이나 방법 혹은 이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취급되는 모든 난, 가공란에 관한 수취나 배분, 판매, 이동 또는 처분 등을 밝힌 장부를 계속 기록하여야 한다. 위의 양쪽 장관이 어떠한 적당한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때는 누구나 적절한 횟수내에서 출입하여 기록을 조사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용인하여야 한다.

제12조(벌칙)

(가) 본법 제8조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자는 유죄판결로 1년이하의 금고나 1000달러이하의 벌금 혹은 그양쪽을 겸하여 처벌한다. 단 그 위반에 사기가 의도되었거나 이물이 함유된 것을 (본법 제4조(가)항(8)에 규정된 것은 제외) 알고 있으면서도 배분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것을 배분하여도 좋다고 하는 어떤 표식이 포함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1만달러이하의 벌금 또는 그 양쪽을 겸하여 처벌한다. 제8조의 규정을 해석하여 시행하는 경우, 개인(영업), 협업,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리(代理)하고 거기에 고용된 자의 책임, 재직중의 행위나 부작위 혹은 불이행의 경우라도 동시에 그러한 개인, 협업,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행위나 부작위 또는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나)어떠한 운송업자나 창고업자도 본법 제11조



그림 1



그림 2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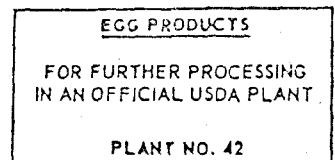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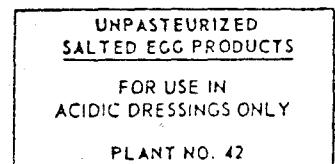


그림 4



를 위반하거나 보조(다)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이 소유한 난이나 가공란을 운송업자나 창고대리업자로서 통상업무를 하는 가운데서 수령, 운송, 보관하거나 배송하는 등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하여 본법의 처벌을 받는 일은 없다. 단 운송업자나 창고업자가 그와같은 난이나 가공란을 운송할 경우에 본법에 근거하여 적당하지 않다거나 혹은 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거나 이와 같이 고려된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한은 하고있지 않다. 또는 운송업자나 창고업자가 그와 같은 난이나 가공난 의뢰인의 성명, 주소를 농무장관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제출하거나 양자간 혹은 양자에 의한 난이나 가공란의 배송에 관한 기록 등 복사하는 일을 거부할 경우에 관한 제한은 없다.

(다) 본법을 토대로 하여 공무를 집행중이거나 집행을 시행하는 자에게 법에 불응하여 폭행하거나 저항, 반대, 방해, 협박 또는 간섭 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혹은 양쪽을 겸하여 처벌한다. 위와 같은 행의를 범함에 있어서 그것이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양쪽을 겸하여 처벌한다. 본법을 토대로 하여 공무를 집행중 이거나 집행해도 좋다고 인정된 자를 살해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합중국법전 제18편 1111조 및 11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역주(譯注) ★

(1) 「난, 가공란검사규칙」(Regulation Governing the Inspections of Eggs and Egg Products Effective May 8,1980)의 일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859.412 (공식검인표식과 공식검인)

(a) 그림1에 표시된 것과 같이 USDA의 문자가 들어간 방패형 (Shield)은 여기서의 목적을 나타낸 공식인정표식으로 본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든간에 가공란에 대해서이것이 사용되거나 모사, 모조된 경우에는 당해 가공란이 공식적으로 검사된 것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 가식가공란의 용기의 표에 암인된 검인은 방패형 내측에 그림2에서 나타낸것과 같은 용어와 디자인이 표시된다. 단, 사업장 번호는 용기표면에 표시된 경우에는 공식인정표식에서는 생략하여도 된다.

§ 2859.414 (공식검인이 있는 가공란) 검인암인이 허가된 가공란은 식용이 가능한 난 또는 기타의 가식가공란으로 공식사업장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단 기타 가식성분을 함유하여도 좋다. 공식검인은 용기 본체를 표시면의 일부로 하여 암인, 사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벗겨진 외포장 부분에다 암인,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업장 번호는 용기표면이나 라벨이 있는곳에 표시되었다면 생략하여도 좋다. 이와 같은 가공란의 경우, 살균, 열처리, 기타 당해국장이 승인한 처리방법을 실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에서 나타낸 공식인정표식을 부착하도록 허가된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가공란은 살균, 열처리 기타의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소비자용의 경로로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a) 본항(b)에서 규정하는 것을 별도로 공인사업장에서 포장된 형태로 출하된 비살균 가공란에는 모두 그림3에 표시된 인정표식을 붙여야 한다. 살균 및 기타의 처리에는 전항에 표시한 공식인정표식을 부착하는 것이 좋다.

(b) 10% 또는 그 이상으로 가염된 것으로 공인사업장에서 산미드레싱 처리업자에게 출하된 비살균가공란은 모두 그림4에 나타낸 공식인정표식을 붙여야 한다. (계속)